##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3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 김승수 · 이종성 · 이명수

김용판 · 김예지 · 정진석

이종배 • 이주화 • 추경호

박덕흠 • 박성중 • 한무경

윤재옥 · 김성원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구급대의 활동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개정).

### 법률 제 호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구조·구급활동"을 "구조·구급활동과 구급차의 이 송"으로 한다.

제28조 중 "구조·구급활동"을 "구조·구급활동과 구급차의 이송"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생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u>구</u>	② <u>국</u>
<u>조·구급활동</u> 을 방해하여서는	조・구급활동과 구급차의 이송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벌칙)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u>구조</u>	<u>구조</u>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구급활동과 구급차의 이송-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